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903호
- 나. 제 안 자 : 강동길 의원 외 9명 찬성
- 다. 제안일자 : 2020년 10월 14일
- 라.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6일

2. 제안이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각각 이원화된 벤처투자 제도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여 제정·시행(2020. 8.12.)됨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던 조례상 용어와 내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을 정의함(안 제2조제4호, 제5호).
- 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 함(안 제5조제2항).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투자 주체별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던 벤처투자제도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로 통합(2020.8.12.)됨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던 조례상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고자 발의됨.

나.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의 개요

-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해 1965년부터 운용되고 있음.
-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이 기금의 주된 기능이었으나, 2018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¹⁾을 근거로 조합에 출자하고 이를 별도의 재원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투자계정’을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제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4.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 신설하면서 ‘융자계정’ 과 ‘투자계정’ 으로 분리·운용하고 있음.²⁾
- 또한, 출자대상을 기존의 창업투자회사와 창업투자조합에서 신기술 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추가하여 확대하였음.

< 투자조합의 개념 >

조 합	내 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한국모태펀드로서, 한국벤처투자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상호출자하여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 사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 기업 직접 투자와 벤처캐피탈 출자를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회사와 공동으로 결성한 벤처펀드

- 현재 서울시는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 6개 분야의 혁신성장펀드³⁾에 출자하고, 이에 대한 운용과 관리는 서울산업진흥원이 대행하고 있음.
- 올해 혁신성장펀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에서 총 313억원을 출자해 총 6,661억원을 결성할 계획임.

< 2020년 혁신성장펀드 추진 현황 >

(단위 : 억원)

2) 투자계정은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융자계정은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관임.
 3) 혁신성장펀드는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서울바이오, 문화콘텐츠, 창업지원, 재도전지원 등 6개 분야에 대해 서울시가 일정규모(펀드별 총 조성액의 10~20%)를 출자하고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 투자금을 합해 조성하며, 전문 펀드운용사가 펀드를 결성해 8년(투자 4년, 회수4년)동안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구분	합계	4차 산업혁명	스마트 시티	문화 콘텐츠	창업 지원	재도전 지원	바이오
결성 예정액	6,661	1,497.5	1,950	504	956.5	1,253	500
서울시 출자액	313	72	72	36	68	45	20

다. 조례상 용어와 내용의 정비(안 제2조, 제5조, 제14조)

- 개정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개별법으로 각각 운영되던 벤처투자에 관한 사항이 벤처투자법으로 통합(2020. 2.11.)됨에 따라 조례상 용어와 내용을 이에 맞춰 변경하려는 것임.
- 안 제2조제4호와 제5호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정의를 벤처투자법 제2조 정의규정을 반영해 인용조문과 일부 내용(창업자에 투자→벤처투자)을 정비하고 있음.
- 또한, 안 제5조와 안 제14조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을 벤처투자모태조합으로 용어를 각각 변경하고 있음.
- 이는 벤처투자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기존 법률에서 벤처투자 제도와 관련된 사항이 이관되거나 삭제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상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한국벤처투자조합(「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이원화된 벤처투자 제도가 “벤처투자조합”으로 통합·일원화되면서 기존 법령에서 삭제되고,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명칭이 벤처투자모태조합으로 변경되었음⁴⁾.

<벤처투자법의 용어 변경>

기존		벤처투자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	벤처투자모태조합

- 개정안은 관계법령의 제명과 조항, 용어 등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즉시 반영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치 법규 접근성과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담당 조사관	연락처
이시우	02-2180-8056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은 이 법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으로 본다.

[참고자료] 관계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 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 다.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 인수
 - 라.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한 지분 인수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
2. "벤처투자"란 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말한다.
4. "초기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초기창업자를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6.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7. "전문개인투자자"란 벤처투자를 하는 개인으로서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8.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9.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10.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37조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11. "벤처투자조합"이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50조에 따라 등록된 조합을 말한다.

제50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외의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4. 「여성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이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서 출자금 총액,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6. 벤처투자조합의 결성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 다만, 외국투자회사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 가. 국내지점과 전문인력 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물적·인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 나.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70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 한국벤처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 등에 대하여 출자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1. 개인투자조합
 2. 벤처투자조합
 3. 「여성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4.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같은 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 ③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 활성화 등 정책 목적에 따라 모태조합의 자산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 ④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밖에 모태조합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모태조합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